

#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

상하이지사

## 현행 GB28050 및 주요 변경 조항

- 지난 12월 19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견수렴) 의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 지난 11월에 예포장식품 라벨표준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이번 달에 영양라벨 통칙의 개정안도 발표된 것인데, 개정사항 중 여러가지 규정이 구체화되었다.

- 새로운 영양라벨 통칙이 시행되면 여러 관련 규정이 수정 될 예정으로, 수출 기업은 현재 이용 중인 중문라벨을 재검 토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aI 현지화지 원사업 활용을 추천한다. 본 사업을 통하여 성분, 중문라 벨, 통관 등 종합적인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현행 GB28050 및 개정안 주요 변경 조항 대조표

현행 GB28050	개정안		
1. 범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포장식품에 적용됨' 추가		
2. 전문용어 및 정의	핵심 영양성분 정의 삭제 2.2 열량의 정의 및 계산방법 추가, 2.4 영양성분의 정의 : 식품 중의 영양소 및 기타 유용한 성분 그 중에 아래와 같은 전문용어의 정의 추가 2.4.1 단백질, 2.4.2 지방, 2.4.3 지방산, 2.4.4 탄수화물, 2.4.5 당류, 2.4.6 비타민A, 2.4.7 나트륨, 2.4.8 칼슘 식품 참고 분량의 정의 추가		
3. 기본요구	소수민족 글자의 사용 및 설명 추가 3.2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은 규범적인 한자로 표기해야 함. 규범적인 문자 외, 동시에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 글자의 의미는 한자와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한자보다 크면 안 됨		
4. 강제 표기사항	강제 표기사항 추가 4.1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비타민A 및 칼슘의 함량 및 그의 영양소 기준치(NRV)의 백분율 일부 영양소의 명칭, 단위, 반올림 단위 및 '0'경계치 수정하며, 영양성분의 권고성 측정방법 추가		
5. 영양성분의 표기 및 표현방법	1)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포함), 미네랄(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의 허용 오차범위 ≥80% 표기치 2) 식품 중의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유당 포함)의 허용 오차범위 ≤120% 표기치		
6.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예포장식품	포장 총 표면적 ≤120cm <sup>2</sup> 혹은 최대 표면면적 ≤25cm <sup>2</sup> 의 식품		
부록 A 영양소 기준치	항목	GB28050-2011	개정안
	콜레스테롤/mg	≤300	삭제
	엽산/μg DFE	400	350
	콜린/mg	450	500
	비타민D/μg	5	10
	아연/mg	15	11
	요오드/μg	150	120
	셀레늄/μg	50	60
구리/mg	1.5	0.8	
부록 B	권고성 영양라벨 표기방법은 6가지에서 8가지로 변경		